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20.6.9 개정) 시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24.1.30. 시행)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 기관·단체 지정요건 완화(안 제30조의5제1항3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5제1항3호 중 “로서”를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중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장이 추천한 기관·단체”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5(불법촬영물등의 신고·삭제요청 등) ① (생략) 1. ~ 2. (생략) 3. 그 밖에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부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제30조의5(불법촬영물등의 신고·삭제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부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중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장이 추천한 기관·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 의안 소관 부서명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연 락 처	(02) 2110 - 1549